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7.

발 의 자 : 이종욱 · 박성민 · 우재준  
김은혜 · 김 건 · 한지아  
송언석 · 조지연 · 배준영  
안상훈 · 박정훈 · 김상훈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·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, 현행법은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.

한편 최근 부산 인근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를 야기한 바 있는데, 이와 관련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대형구조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점용·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, 항공

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협의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3항).

##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대하여 점용·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1.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
2. 항공안전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
3. 군사작전 및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협의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

에도 적용한다.

